고용유지지원금 제도

□ (개요) 일시적 경영난으로 **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**가 휴업·휴직 등 **고용유지조치**를 하는 경우 **인건비 일부 지원**

* 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·매출액 15% 이상 감소 등

□ 지원요건

○ (유급 고용유지지원금) ①**휴업**: 피보험자 전체 **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% 초과하여 단축**, ②**휴직**: **1개월 이상** 휴직 부여

○ (무급 고용유지지원금) ①**무급휴업**: Ⓐ**30일 이상** 실시, Ⓑ**일정 규모*** **이상** 무급휴업 실시, Ⓒ**노동위원회 승인**

* ▴50% 이상 (19인 이하), ▴10명 이상 (99명 이하), ▴10% 이상 (100명~999명), ▴100명이상 (1,000명 이상)

- ②**무급휴직**: Ⓐ**30일 이상** 실시, Ⓑ**일정 규모*** **이상** 무급휴직 실시, Ⓒ무급휴직 1년 이내 **3개월**** **이상 유급휴업** 또는 **피보험자 20%이상 휴직** 실시, Ⓓ**근로자대표 합의**

* ▴10명 이상 (99명 이하) ▴10% 이상 (100명~999명) ▴100명 이상 (1,000명 이상)

**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%이상 유급휴직 실시

□ 지원금액

구분	유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		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	
	지원수준	지원한도(기간)	지원수준	지원한도(기간)
일반업종	·우선지원 2/3 ·대규모 1/2 또는 2/3* * 단축율 50%이상	·우선지원(대규모) 1일 6.6만원 (연 180일)	·평균임금의 50%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	·우선지원(대규모) 1일 6.6만원 (최대 180일)
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	·우선지원 9/10 ·대규모 2/3 또는 3/4* *단축율 50%이상	·우선지원 1일 7만원 ·대규모 1일 6.6만원 (연 180일)	·평균임금의 50%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	·우선지원(대규모) 1일 6.6만원 (최대 180일)

□ 지원절차

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*	→	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**	→	고용유지조치 실시	→	지원금 신청 (매월)	→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사업주 → 고용센터		6개청 및 제주고용센터		사업주		사업주 → 고용센터		고용센터 → 사업주 또는 근로자

*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실시 하루전 까지 신고(단, 집합제한·금지업종은 30일이내 신고 가능)

*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